

韓國에 있어서의 萬國公法の 受容과 그 影響

李 光 麟*

1. 序言
2. 萬國公法の 受容
3. 萬國公法の 影響
4. 結語

1. 序 言

萬國公法이란 오늘날의 國際法을 가리킨다. 1860年代 이후 中國에서 쓰기 시작하고 그 뒤 韓國・日本에도 傳播되어 오랫동안 通用되었던 말이다.

원래 東洋에는 各國마다 固有의 法律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國內法에 限하였고 國際法은 存在하지 않았다. 그것은 印度, 이슬람, 中國 등 몇 개의 文化圈으로 나뉘어져 있어 統一的인 文化나 國際關係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도시 國際라는 概念이나 國際法은 유럽 文化圈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특히 國際法은 17世紀에 이르러 로마法王과 로마皇帝의 權威를 背景으로 形成되었던 中世封建社會의 秩序가 崩壞되고 그 뒤에 登場한 主權國家의 並列的인 相互關係를 規律하는 데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嚴密한 意味에서 보면 그것은 유럽의 기독교 國家에서만 適用되는 法이었다. 따라서 기독교적 유럽 국제법, 또는 유럽 公法(jus Publicum Europaeum)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런데 近世에 이르러 유럽諸國이 東洋에 進出하면서 이 國際法の 實施를 强要하였다. 開港과 같은 것은 그 結果에서 나온 것이었다. 東洋側에

*西江大學校 史學科 教授

서 보면 유럽의 國際法秩序속에 編入됨에 이르렀던 것이다. 韓國도 그 範疇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儒敎思想에 바탕을 두었던 華夷觀과 「事大字小」(大를 섬기고 小를 사랑한다는 뜻) 主義라는 既存秩序 或은 價値體系가 깨어지고 異質的인 法概念 下에 들어가게 되었다.

本稿는 萬國公法이라고 일컬었던 國際法이 언제, 어떻게 韓國에 受容되고 또 그것은 어떠한 영향을 끼쳤던 가를 살펴보려는 데 目的을 두고 있다.¹⁾ 물론 筆者는 法律에 대해 別般 知識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研究가 힘에 겨운 일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韓國에서 萬國公法을 受容한 1870, 80年代에 焦點을 맞춰 若干의 問題點이라도 提示해 볼까 한다.

2. 萬國公法の 受容

阿片戰爭이후 中國에서는 西洋의 學問과 制度 등을 紹介하는 책이 多數 刊行되었다. 처음에는 地理, 歷史에 관한 책, 뒤에는 軍事, 醫學, 採鑛 등 自然科學, 그리고 政治, 經濟, 法律 등 社會科學에 관한 책이 刊行되었다.

그중 法律에 관한 책으로 제일 먼저 刊行된 것이 萬國公法이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책은 미국 宣敎師요, 北京 同文館 總敎習이었던 「마틴」(W.A.P. Martin, 丁燮良, 1827~1916)이 미국 法學者 「휘튼」(Henry Wheaton, 惠頓, 1785~1848)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漢譯하여 1864년에 刊行한 것이었다.²⁾ 中國 知識人들은 이 책을 열심히 읽었고, 또 이를 통하여 비로서 各國間의 交通에도 준수해야될 法則이 있다

1)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論文에도 若干의 言及이 있다. 李漢基, 「韓國 및 日本의 開國과 國際法」(『學術院論文集』 人文·社會科學篇 19輯, 學術院, 1980).

2) 萬國公法の 凡例를 보면, “是書所錄條例 名爲萬國公法 蓋係諸國通行者 非一國所得私也 又以其與各國律例相似 故亦名爲萬國律例云”이라하여, 이 책의 이름을 “萬國律例”라고도 하였으나 萬國公法이 定譯이 되다시피 하였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萬國公法이 언제, 어떻게 韓國에 傳來되었을까? 이를 밝힐만한 史料는 없는 것 같다. 그런데 日本과 江華島修好條約을 체결한 다음 해인 1877年 12月 日本의 外交代表 花房義實이 韓國의 禮曹判書 趙寧夏에게 『星軹指掌』³⁾과 함께 이 책을 寄贈한 것이 처음일 것이라는 說을 내세운 사람이 있다.⁴⁾ 日本側에서는 江華島修好條規 第2款에 規定된 公使의 서울駐在를 韓國政府에서 極力 忌避하여 應하지 않자 公使의 駐京은 各國이 實施하고 있고, 또 淸國도 이를 따르고 있음을 證據로 提示하기 위해 그와 같은 책을 寄贈하였던 것이다. 그중에서 星軹指掌은 中國에서 漢譯 刊行된 것이 前年度인 1876년이었으니 그 책의 韓國傳來는 日本側의 寄贈이 처음이었을 可能이 있으나, 萬國公法은 그보다 훨씬 以前에 傳來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까닭은 韓國政府에서 1年에도 몇 차례씩 中國에 派遣하는 使節들에 依해 購得하여 왔을 것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阿片戰爭 뒤 西洋의 地理와 歷史를 최초로 紹介한 『海國圖志』만해도 1844년에 中國에서 刊行된 지 몇 달 뒤 中國에 派遣되었던 使節에 依해 韓國에 傳來된 바 있었다.⁵⁾ 그리고 萬國公法이 刊行된 1864年에서 江華島條約이 체결된 1876年 2月까지 韓國에서 中國에 派遣된 使節回數만해도 23회를 헤아리고 있으니,⁶⁾ 그동안에 萬國公法은 얼마든지 韓國에 傳來되었을 것이다. 吳世昌(1864~1953)이 自己 아버지에게 대해 回顧하는 말 중에,

우리 아버지 吳慶錫은 韓國의 譯官으로서 당시 韓國으로부터 中國에 派遣되는 多至使及 기타의 使節의 通譯으로서 누차 中國을 往來하였다. 中國에 체재 중 世界各國의 角逐하는 狀況을 見聞하고 크게 느끼는 바 있었다. 뒤에 列國의 歷史와 各國興亡史를 연구하여 自國政治의 부패와 世界의 大勢에 뒤떨어져 있음을 깨

3) 이 책은 프랑스人 마탱(Charles de Marteng, 巴崙馬兒顚)이 著述한 'Le Guide Diplomatique', 즉 外交學入門으로 역시 同文館에서 漢譯, 刊行되었다.

4) 李漢基, 前掲 論文 p. 219.

5) 拙著, 『改訂版 韓國開化史研究』(一潮閣, 1974), pp. 3~7.

6) 『高宗時代史』1(國史編纂委員會, 1967) 참조.

단고 언젠가는 반드시 悲劇이 일어날 것을 깨닫고 크게 慨歎하는 바 있었다. 이것으로서 歸國할 때에 各種의 新書를 持參하였다...⁷⁾

고 있는 것을 參考할 수 있다. 위의 이야기는 어느때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또 갖고 온 책을 하나 하나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1864年 위의 이야기라면 萬國公法도 이 新書속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問題는 萬國公法이 中國에서 刊行된지 얼마 안 된 時期에 韓國에 들어왔다해도 即刻의으로 知識人들에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당시에 있어서도 如前히 華夷觀이 韓國의 思想을 支配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西洋을 夷로 보고 西洋의 思想과 制度를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분위기 속에서는 不可能하였다.

그뒤 1866年의 丙寅洋擾, 71年의 辛未洋擾를 통해 西洋勢力과 직접 武力衝突을 격고나서 知識人들의 關心이 서서히 바뀌어졌다. 洋夷의 正體를 파악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이었다. 사실 18世紀 末에서부터 西洋船舶이 우리 海岸에 나타나 通商을 要求하였으나 韓國의 爲政者나 知識人들은 한결같이 鎖國을 고집하고 거절하였다. 이 時期에는 武力衝突이나 직접적인 危脅이 가해지지 않았던 것이므로 洋夷에 대해 無關心하였고 또 別般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직접 武力衝突을 겪게되자 달라졌다.⁸⁾

이에 知識人들은 中國에서 들어온 魏源의 『海國圖志』, 徐繼畬의 『瀛環志略』 같은 책을 熱心히 읽었다. 특히 『海國圖志』에 들어 있는 「籌海篇」에 關心을 쏟았다. 海上에서 쳐들어오는 洋夷를 막기 위해서는 果敢하게 洋夷의 長技를 採用해야 된다는 海防思想에 共感을 하였다.⁹⁾ 한편 中國을 訪問하여 洋夷로부터 직접 侵略을 당하고 있는 實態도 살폈고, 또 그곳 政治家들과 對話를 나눔으로써 새 知識을 얻었다. 이에 關해서는 朴珪壽

7) 『金玉均傳』(古筠紀念會, 東京, 1944), pp. 48~49.

8) 前掲『改訂版 韓國開化史研究』, pp. 7~17.

9) 同上.

와 姜瑋의 경우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朴桂壽는 1866年 美國商船 「제네럴 셔어먼」(General Sherman)號가 大同江을 거슬러 平壤에 侵入하였을 때 平安監司로서 大院君 李昰應의 強硬한 鎖國政策을 받들어 軍民에게 그 商船을 燒沈토록 命한 바 있었다. 그렇지만 그뒤 1871年 辛未洋擾를 겪고 다음 해, 즉 1872年 進賀兼謝恩使로 中國에 갔다가 돌아온 뒤로 既往의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 이에 대해 文一平(1888~1939)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上略) 다만, 後學小生인 吾人の見解에 依하면 璣齋(朴桂壽의 號)가 近代 名宰相이오 당시 先覺者임에 틀림이 없지마는 그가 宇內大勢에 通曉하게 된 경로로 말하면 일찍 그가 奉命使臣으로 燕京에 往來하면서 얻은 見聞과 또는 거기서 사가지고 온 泰西譯書에 依賴한 바 크다 할 것이니, 이것만은 거의 疑心할 餘地가 없다. 書籍으로부터 新知識을 얻게 된 것은 어느 때인지를 推察할 길이 없으니 그가 몸소 燕京에 가서 見聞에 依하여 얻어온 對外知識은 적이 臆작하지 못할 바 아니다. 그는 바로 辛未洋擾가 있은지 1年 뒤인 1872年 壬申에 두번째 燕京에 갔을 때 일찍 欽差大臣으로 歐米(美)諸國을 다녀온 淸人 崇厚的 兄 崇實을 訪問함에 依하여 비로소 宇內的 形勢를 間接으로 得聞하게 된 것이다...(下略)¹⁰⁾

여기에 나오는 崇實(1820~76)은 滿洲 鑲黃旗人으로 동생 崇厚(1826~93)와 함께 中國政界에 影響力을 갖고 있었고, 또 外國의 物情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朴桂壽는 그와의 對話를 통해서 國際情勢를 얻어 들을 수 있었다.

姜瑋는 官職에 오른 일은 없으나 思想家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1873年 12月과 다음 해, 74年 12月 冬至使節에 隨行하여 中國을 訪問하였고, 그리고 그 旅行을 통해 思想的 轉換을 이룰 수 있었다. 李建昌이 쓴 姜瑋의 墓誌銘 중에,

會君從鄭判書赴燕京 歸以其所與中國人談者 爲文示余 皆舊所禁諱 使人駭怖 君且讀且噫且笑 意氣流動 余則默然 固有以卜之矣 明歲余又赴燕 君又從 既至餘所聞見

10) 『湖岩全集』(一誠堂書店, 1948) 3卷, p. 81.

或與君同異 然固不以君爲無微也 及歸 事遽悉改 縱衡馳驚之士 公道天下事 莫可防制 余自恃愚不足預 遂悉謝遺胸中所往來 以日趨憤憤 而君則稍憾其所蘊 遂益有名…(下略)¹¹⁾

이라하여, 당시 나라에서 禁하고 있던 문제들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 하였으며, 특히 두번 倭로 中國에 갔다 온 뒤로는 縱衡, 즉 合縱連衡을 내세우고 天下의 문제를 公公然히 主張하였다는 것이다. 天下의 문제란 必是 國際情勢일 것이고 縱衡이란 列強의 勢力均衡 속에서 韓國이 나아갈 길을 내세운 것이었다. 그러므로 既往의 中國을 中心으로 하는 東洋社會가 아닌, 國際社會 속에서 韓國의 位置를 찾으려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思想的으로 바뀌게되자 華夷觀은 자취를 감추게되고 또 諸國平行之權, 즉 東洋이든 西洋이든 世界의 모든 國家들이 平等한 地位에 있음을 承認하게 되었다. 自然히 萬國公法思想도 容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中國을 訪問하여 새로운 思想을 體得하게 된 朴珪壽와 姜璋은 歸國하자 周圍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國際問題에 대해 關心을 갖도록 力說하였다. 이를테면, 金允植의 『槩堂詩鈔序』에,

俞渠堂(俞吉濬의 號)吏部 少有儒才 自髫齡時 出語不俗 朴獻齋先生嘗見其詩 知其爲國器 大加獎勵 授以魏默深海國圖志曰 以時外洋事不可不知也 吾以是自奮…(下略)¹²⁾

이라 있듯이, 朴珪壽는 俞吉濬에게 魏源의 『海國圖志』를 주면서 오늘날에는 外洋事, 즉 國際問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고 말함에 이로써 奮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姜璋의 경우에 있어서도,

(上略)乃已三教九流 無不貫穿 而尤致力於四子書 間出入孫吳子形勢之言 好論天下事 視世俗不達變者悶焉…(下略)¹³⁾

11) 『李建昌全集』(亞細亞文化社, 1978) 下卷, p. 1086.

12) 『俞吉濬全書』(一潮閣, 1971) 5卷, p. 161.

13) 『姜璋全集』(亞細亞文化社, 1973), p. 373 (李重夏 撰 本傳).

이라 있듯이, 한국이 새로운 變化에 아무런 反應을 나타내지 않음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뒤인 1895年 9月 日本 軍艦 雲揚號가 江華島를 侵犯하였다. 그리고 日本은 賊反荷杖格으로 이 事件을 利用하여 韓國의 開港을 要求하였다. 韓國의 朝野는 激憤하고 決死的으로 開港에 反對하였다.

이때 朴珪壽와 姜瑋의 태도는 달랐다. 그들 역시 日本의 挑發에 憤慨하면서도 앞서부터 開港의 必要性을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日本과의 會談이 決裂되어 武力衝突이 일어나기 前에 平和的으로 協商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¹⁴⁾ 그들의 主張이 政府內에서 받아들여져 마침내 1876年 2月 27日 江華島에서 韓日修好條約이 체결되었다.

물론 條約締結 當時에 있어서도 萬國公法에 關心을 가졌던 사람은 적었다. 萬國公法이 漢文으로 譯述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것이다. 그러나 깊이 研究한 사람은 없었다. 따라서 日本側과 똑똑히 協商도 해보지 못하고 日本側에게 一方的으로 有利하게 되어 있는 不平等條約을 체결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條約締結이후 日本政府는 더욱 더 어려운 問題를 提起하여 韓國政府를 괴롭혔다. 이를 테면, 通商章程의 締結, 公使의 首都서울 常駐, 釜山港 以外の 東海岸과 西海岸에 대한 開港 등을 要求하였다. 특히 1876年 8月 5日 通商章程을 체결할 때에 日本側의 欺瞞外交에 농락되어 無關稅를 承認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韓國이 萬國公法에 대한 無知를 端的으로 드러 낸 것이라 할 수 있었다. 1880年 7月 金弘集을 代表로 하는 第2次 修信使가 日本에 派遣되었다. 韓日修好條約 체결 直後에 派遣되었던 第1次 修信使 金綺秀 一行이 條約체결에 따른 儀禮의인 訪問을 한때에 대해 金弘集 一行은 日本의 物情도 探索할 겸 開港 이후에 發生한 問題들을 解決해 보려고 하였다. 無關稅문제도 그 속에 包含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日本側이 協商을 忌避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金弘集 一行은 在東京

14) 『日省錄』 高宗 13年 1月 20日條.

淸國公使館의 公使 何如璋, 副使 張斯桂, 參贊官 黃遵憲과의 6회에 걸친 會談을 통해 國際情勢, 通商上의 實務的 諸問題, 그리고 朝鮮의 外交政策의 進路등에 대해 듣게된 것은 큰 收穫이었다. 이 會談으로 그들은 見識을 넓힐 수 있었다. 특히 7月 16日 淸國公使館에서 第2次 會談을 가졌을 때 다음과 같은 內容의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고 한다.

璋(何如璋을 가리킴)曰 敝□□□先生 是我國最通時務之人 今年逾六旬 神明猶如四十許人 亦異裏也

宏(金弘集을 가리킴, 당시의 이름은 金宏集이었다)曰 近讀萬國公法序文 先生蘊抱 早已仰悉 年高德邵 神明益旺 尤可敬也¹⁵⁾

위의 何如璋 말중에서 人名을 왜 覆字로, 즉 □□□로 表示하였는지 갑자기 斷定할 수 없으나 □□□는 分明히 張斯桂였다. 張斯桂는 1864年 同文館에서 萬國公法을 刊行할 때 序文을 쓴 사람이었고, 1880년에는 駐日淸國公使館의 副使로 있었다. 위의 引用文을 보면 金弘集은 이미 萬國公法을 읽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序文을 쓴 張斯桂를 淸國公使館에서 만나자 매우 기뻐했을 것이고, 또 그로부터 萬國公法을 철저히 익혀야 된다는 말도 들었을 것이다.

參贊官 黃遵憲은 6회에 걸친 會談內容을 整理하여 小冊子로 만들어 金弘集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朝鮮策略』이었다. 金弘集은 歸國하자 國王에게 그것을 바치었다. 朝鮮策略이란 앞으로 韓國이 取해야 될 外交政策을 설명한 것이었다. 그 骨子は 「親中國・結日本・聯美國」이었다.

金弘集이 日本에서 歸國할 때 黃遵憲으로부터 朝鮮策略과 함께 『易言』도 얻어 갖고 왔다. 易言은 中國의 思想家 鄭觀應(別名 官應, 號는 陶齋, 1841~1923)이 著述한 책이었다. 鄭觀應은 어렸을 때 美國 宣教師로부터 英語를 배운 뒤 上海, 香港 等地에서 30餘年間 外國商社의 買辦으로 일을

15) 『修信使日記』(國史編纂委員會, 1958), p. 175.

하면서 中國의 自強문제에 대해 關心을 쏟았고, 그리하여 책을 著述하였던 것이다. 그 책의 內容은 自強의 方法에 關한 것이었다.

易言은 上下 2冊으로 되어 있고 36個 項目으로 編成되어 있다. 그중 上卷의 첫 項目이 「論公法」이었다. 이처럼 첫머리에 公法을 놓은 것은 重要視했기 때문일 것이다. 「論公法」에는 萬國公法을 익혀야 된다는 內容이 많이 들어 있다. 이를테면,

(上略) 至於今 則歐洲各國 兵日強 技日巧 鯨吞蠶食 虎路狼貪 環地球九萬之中 無不周游 販運中國 亦廣開海禁 與之立約 通商又一變 而爲華夷聯屬之天下矣 是知物極則變 變久則通 雖以聖繼聖而興 亦有不能不變 不得不變者 實天道世運人事有以限之也 況歐洲各國動以智勇相傾 富強相尙 我中國與之并立 不得不亟思控制因變達權 故公法約章宜修也……(下略)

라 하여, 유럽諸國들이 智勇을 다하고 있고 富強을 崇尚하고 있기 때문에 中國이 이들 유럽諸國과 對局하려면 公法約章을 익혀야 된다고 되어있고, 또

方今 俄與英美普法澳日諸國 爭逐海上 何殊戰國土堆 論者謂俄據形勝之也 逞強富之雄 闢土開疆 勵精圖治 則秦之連橫也 英美普法澳日諸國 立約要盟 練兵修改 悉意備俄 則六國之合縱也 而各國之藉以互相維繫 安於輯睦者 惟奉萬國公法一書耳 其所謂公者 非一國所得 而私法者 各國胥受其範 然明許默許性法例法 以理義爲準 繩以戰利爲綱領 皆不越天理人情之外 故公法一出 各國皆不敢肆行 實於世道 民生大有裨益 然必自視其國 爲萬國之一 而後公法可行焉 若我中國自謂居地球之中 餘概目爲夷狄 向來劃疆自守 不事遠圖通商以來 各國恃其強富聲勢相聯 外託修和 內存覬覦 故未列中國於公法以示外之意 而中國亦不屑自處爲萬國之一列 入公法以示一尊 正所謂孤立無援獨受其害 不可幡然變計者也……(下略)

라 있다. 즉, 오늘날 러시아의 勢力膨張에 대해 英國, 美國, 獨逸, 프랑스, 오스트리아, 日本 등 6國이 同盟을 맺고 對抗하고 있는데, 이 6國의 關係를 規制하고 和睦케 하는 것은 萬國公法이다. 그런데 中國은 그 동안 自己를 地球의 中心에 있다고 믿고 周圍에 있는 나라들을 夷狄으로 看做하여 왔다. 이 때문에 孤立無援의 狀態에 빠지고 害를 입고 있다. 따라서

하루 速히 中國도 萬國 中の 하나라는 것을 알고 外國과 접촉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萬國公法の 內容은 오늘날의 國際法 書籍처럼 法律的으로 分化되어 있지 못하였다. 道德的 規範이나 近世유럽의 歷史도 들어있다. 특히 道德的 規範은 그 中心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敘述되어 있다. 이를테면, 萬國公法 卷 1에,

服化之國 所遵公法條例 分爲二類 以人倫之當然 諸國之自生 撥情度理 與公義相合者一也 諸國所商定辨明 隨時改革 而共許者二也

라 있듯이, 各國마다 遵守해야될 公法條例를 두 種類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人倫과 公義가 서로 符合되는 것이 그 첫째라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그 道德的 規範을 「性法」이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을 다시 萬國公法 卷 1에서 보면,

其所謂性法者無他 乃世人天然同居當守之分 應稱之爲天法 蓋爲上帝所定 以令世人遵守 或銘之於人心 或顯之於聖書 邦國天然同居 雖無統領之君 即可將此性法 以釋其爭端 此乃諸國之義法也

라고 있듯이, 性法은 上帝가 定한 바의 것이며 그 性法에 바탕을 둔 萬國公法은 天法, 天道, 義法이라는 것이었다.

萬國公法이 이와같은 內容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韓國의 知識人, 즉 儒學者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人間의 本性에 따르는 것을 理想으로 생각하고 있던 儒學者들의 思想과 矛盾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¹⁶⁾

易言이 韓國에 傳來된 時期를 前後하여 『公法便覽』과 『公法會通』이 또한 傳來되었다.¹⁷⁾ 公法便覽은 美國人 「울시」(Theodor Woolsey, 吳爾璽)의

16) 日本의 경우에도 그러하였으니 이에 대해서는 大平善禧, 「國際法學의 移入과 性法論」(『一橋論叢』2.4, 東京商科學大學, 1940) 참조.

17) 公法便覽과 公法會通도 언제, 어떻게 韓國에 들어 왔는지 正確히 밝힐 수는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를 1877년에, 公法會通은 獨逸人 「블룬츨리」(Johannes C. Bluntschli, 步倫, 1808~1881)의 'Das moderne Völkerrecht der Civilisierten Staaten als Rechtsbuch dargestellt'를 1880년에 역시 同文館 總敎習 「마틴」이 漢譯, 刊行한 것이었다.¹⁸⁾ 韓國 知識人들은 위의 책도 읽고 國際法을 익혔다. 그러나 위의 책보다 앞서 들어온 萬國公法을 더욱 많이 參考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3. 萬國公法の의 影響

漸次로 知識人들 사이에서 萬國公法에 대한 關心이 높아졌다. 同時에 當장 이를 遵守해야 된다는 분위기도 造成되기 시작하였다. 金允植의 「天津奉使緣起」중에,

我國素無他交 惟北事清國 東通日本而已 自數年來 宇內情形一變 歐洲雄長東洋諸國 皆遵其公法 捨此則孤立寡助 無以自保¹⁹⁾

라 하여, 數年來로부터 世界情勢가 一變하여 유럽이 東洋諸國보다 뛰어나고 모든 나라들이 公法을 遵守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를 버리게 되면 세계에서 孤立되고 도움을 받지 못해 스스로 保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萬國公法을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韓國 知識人들이 公法 중에서 특별히 興味를 가졌던

없다. 그러나 여러 루우트를 통해 들어 왔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루우트도 그 하나였다. 즉 『陰晴史』(國史編纂委員會, 1958) 高宗 19年 (1892) 5月 29日條에, “話畢辭起 訪龔魯卿 傳尹石汀(尹泰駿) 書 魯卿 指案上數部書 此業欲奉贈石汀者也 內有星輅指掌·公法便覽及地球全圖各兩部 其一部 奉贈閣下 余屢辭不獲 遂帶歸…(下略)”라 있듯이, 金允植이 領選使로 學徒·工匠을 거느리고 天津에 갔을 때 龔魯卿으로부터 星輅指掌, 地球全圖와 함께 公法便覽을 얻어 갖고 왔다.

18) 블룬츨리의 公法會通은 한국에서도 刊行되었으니 建陽元年 (1896年) 5月 學部에서 당시의 編輯局長 李庚植의 序文을 붙여 淸國의 先緒本을 본따 木活字를 使用 出版 되었다.

19) 『金允植全集』(亞細亞文化社, 1980) 卷 2, p. 512(天津奉使緣起<壬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다시 말하면 韓國이 萬國公法을 遵守함으로써 어떤 利得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까? 다른 나라들이 모두 遵守하니까 우리도 遵守해야 된다는 式의 생각만으로는 흥미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우선 「均勢」에 흥미를 가졌던 것 같다. 均勢라 하면 萬國公法 卷 1에,

(上略) 歐羅巴諸國 常以土耳其之自主 不分裂 與均勢之法(所謂 均勢之法者 及使 強國 均平其勢 不持以相凌 而弱國賴以獲安焉 實爲太平之要術也) 大有相關 故與土 國互相公議盟約 土國因而服歐羅巴之公法也……(下略)

라 있듯이, 強國이 勢力均衡을 이뤄 서로 侵犯함이 없고 弱少國은 이에 依賴하여 安寧을 얻는 法이라는 것이다. 韓國은 弱少國이었고 항상 周圍에 있는 強國들의 威脅속에 있었다. 그러므로 均勢는 바람직한 것이었다. 韓日修好條約을 체결한 지 3個月 뒤인 1876年 5月 修信使로 日本에 派遣되었던 金綺秀가 見聞記『日東紀游』에서,

其所謂萬國公法者 諸國締盟 如六國連衡之法 而一國有難 萬國救之 一國有失 萬國攻之 無偏無憎 無偏攻擊 此西人之法 而方規奉行 不敢有失²⁰⁾

이라 하여, 古代 中國의 合縱連衡法으로 均勢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해 關心을 가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均勢가 아무리 바람직한 것이라해도 西洋의 것을 모두 排擊해야 된다는 이론바, 斥邪派의 외침이 강한 때는 公公然히 主唱될 수 없었다. 따라서 1880年 第2次 修信使로 日本을 訪問하였던 金弘集이 淸國公使 何如璋과 會談할 때에,

璋(何如璋)曰 近日西洋各國 有均勢之法 若一國與強國隣 俱有後患 則聯各國以圖 章制 此亦自前不得已應接之一法

宏(金弘集)曰 均勢二字 近始從公法中見之 然本國懷守舊規 視外國如洪水猛獸 自來斥異教甚峻故也 下教如此 弟當歸告朝廷²¹⁾

20) 『修信使記錄』, p. 70.

21) 同上書, p. 177.

이라 있듯이, 何如璋이 均勢에 대해 설명하자 金弘集은 萬國公法에서 그 말을 보았으나 斥邪思想이 韓國社會를 支配하고 있는 處地에 敢히 말할 수 없다고 對答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韓國知識人들은 진정으로 均勢가 이뤄지기를 바랐다. 그리고 러시아가 虎視眈眈 韓國을 노려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外國, 특히 美國과의 修交를 생각하게 되었다. 아래와 같은 黃遵憲의 朝鮮策略에서의 主張도 큰 영향을 끼쳤다.

(上略) 今天下萬國 縱橫搏噬 甚於戰國 而列國星羅布 欲保無事 必求無甚弱無甚強 互相維持而後可 苟有一國焉 行其并吞則力厚 力厚則勢強 勢強則他國亦不克自安 歐洲一土 群雄角立 彼我之眈眈虎視者 既無聞可集 故天下知其志必將東向 東必自朝鮮始 俄苟有朝鮮 則亞細亞全勢 在其掌握 惟意所欲 而挾亞細亞全局之勢 反而攻歐羅巴 勢殆不可敵 泰西公法 無得剪滅人國 然苟非條約之國 有事不得與聞 此泰西諸國 所以欲與朝鮮結盟也 欲與朝鮮結盟者 欲取俄國一人欲佔之勢 與天下互均而維持之也 保朝鮮 即所以自保也此 非獨爲然 英·法·德·意 以朝鮮地膏 必傾戰攻取 迭有創傷以劫盟約 尙非其所願 惟美國自以爲信義所著 久爲中東兩國所信服……(下略)²²⁾

즉, 泰西公法(萬國公法을 가리킬 것이다)에 依하면 어떤 나라도 마음대로 滅亡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그렇더라도 條約을 맺지 않는 나라는 누구나가 도와줄 수 없다. 그러므로 西洋諸國이 朝鮮과 條約을 맺으려고 하는데 西洋諸國 중에서 가장 믿을만한 나라는 美國 뿐이니 速히 美國과 조약은 맺으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修信使 金弘集이 日本에서 돌아온 1880年 10月부터 韓國政府는 美國과의 條約締結에 熱을 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協商을 하는데 若干의 時間이 걸렸으나 드디어 82年 5月 締結함에 이르게 되었다.

위에서 說明한 均勢 외에 韓國 知識人들이 萬國公法 중에서 흥미를 가졌던 또다른 문제는 「自主」였다. 원래 「主權」이니, 「自治」니, 「自主」라는 말은 萬國公法에서 처음 使用된 것이었다. 自主라 하면 말할 것도 없이

22) 同上書, pp. 164~165.

남의 保護나 干涉을 받지 아니 하고 獨立으로 行함을 가리킨다. 오랫동안 中國의 保護 혹은 影響下에 있었던 韓國으로서는 나라가 나라다우려면 「自主之權」을 行使해야 된다는 말에 누구나가 魅力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1881年 봄 日本의 新式 文物制度를 調査시키기 위해 韓國政府에서는 紳士遊覽團을 派遣하였다. 그 遊覽團의 一員이었던 金允植이 財政制度를 調査하면서 들은바를 記錄하기를,

政府之所深憂者三 一. 裁判之權 每被外國人牽制 一. 治外之權 不立 一. 稅關之權已爲外國人所欺也

此國與諸國立約之時 不能明言自治之權 不能律外人以該國之法 稅關則見欺於各國 俱未免爲其牽制 所宜深察乎 此必立自主之權可也²³⁾

라 하였듯이, 日本이 外國과 條約을 체결함으로써 治外法權, 稅關權 등 自己의 權限을 빼앗겨 오늘날 크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 이를 깊이 洞察해야 될 일이며, 나라는 반드시 自主之權을 行使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은 그 實情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역시 1881年 末 中國에서 韓美修交를 위한 協商이 進行되고 있을 때 金允植이 李鴻章에게 보낸 글 중에,

(上略) 雖然 小邦積弱之餘 急難自振 縱云通商鍊兵 非可時月見效 爲今之道 惟有 擇邦 善交 講信 修睦 從以彌縫 疎失以備陰雨 庶幾爲目下之急務 而泰西諸國中 久聞 美邦國富兵強心性和 國富則少貪 兵強則可恃 心公則處事平 性和則執禮恭 且聞近日 頗盛慕華風 購買經籍 周孔之道 未必無西被之理 先通美國 公平立約 俾嗣後來款者 一遵成式 無害我自主之權 此又急務最當先者也……(下略)²⁴⁾

라 하여, 美國과의 修交는 韓國의 自主之權을 害치는 것이 아니어서 무엇 보다 더 推進해야 될 急務라고 하였고, 또 金允植이 李鴻章과의 會談 內容을 國王에게 報告하는 글에서도,

23) 『金允植全集』(亞細亞文化社, 1980), p. 80(隨聞錄).

24) 『金允植全集』卷 2, pp. 299~300.

(上略)(李鴻章)又曰……(中略)此指黃(遵憲)稿第一款 朝鮮奉中國政府命云云 若如是 則美國亦渾入於中國命令之中 故彼必難允者也 臣謂此條立言 非徒美使難允在我亦既自主之權 恐難仍用……(下略)²⁵⁾

이라고 自主之權을 強調하고 있는 것도 그 例에 속한다.

이처럼 均勢와 自主라는데 눈을 돌리게 되자 많은 韓國 知識人들이 萬國公法 등 中國에서 들어온 新書를 열심히 읽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江原道儒生 洪在鶴의 上疏가 제출되었던 것이다.

(上略)所謂中西聞見・泰西聞見・萬國公法等許多異類之邪書 充滿於國中 而所謂名士碩儒 好新尙奇之輩 淪胥而入 樂而忘返 更相稱美 而名與位祿 不日而從……(下略)²⁶⁾

즉, 「中西聞見(錄)」 「萬國公法」 등 許多한 邪書가 나라 안에 充滿하고 所謂 有名한 선비와 新奇함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邪書의 內容에 빠져 서로 좋다고 稱讚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韓國社會에는 以上과 같은 進步的인 知識人이 있었다 해도 그 數는 적었고 그 影響 또한 적었다. 오히려 保守的인 思想家인 斥邪論者의 외침이 드세었고, 그 影響이 컸다. 그들은 萬國公法 등의 책이 邪書이므로 國民들에게 절대로 읽혀서는 안된다고 主張하였고, 심지어 洪時中같은 이는 國王에게 上疏하는 글 중에서,

(上略)今日所謂中西聞見・萬國公法・公史・地球羣環・申報・興亞會雜事詩續・今日抄工業・六學等書 黃遵憲策略等許多文字 請一一搜出鍾路上付火 煥發德音 深陳既往之悔 用布斥邪之義 俾萬姓明聽敬服……(下略)²⁷⁾

이라 하여, 中西聞見(錄), 萬國公法과 같은 邪書를 政府에서 즉각 索出하여 鍾路에 내다가 불살라 버리라고까지 極言하였다.

25) 『陰晴史』 上卷 p. 57.

26) 『高宗・純宗實錄』(國史編纂委員會, 1970) 高宗 18年 閏 7月 6日條.

27) 『日省錄』 高宗 18年 3月 23日條.

1882年 7月 舊式軍隊에 依한 叛亂 이른바, 壬午軍亂이 일어났다. 이 亂을 契機로 鎖國政治家 大院君 李昰應이 政治의 前面에 나서는 한편 그 동안 政府에서 推進하였던 開化政策을 廢棄하였다. 그러나 얼치락 뒤치락이라고 할까 軍亂은 不過 1개월만에 鎮壓되고, 開化政治家들이 政府에 復歸하여 實權을 掌握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에는 知識人들 사이에서 保守, 反動을 除去하고 改革을 斷行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知識人들은 나라의 富強을 꾀하기 위해서는 果敢히 새로운 海外 文物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意見을 披瀝하였던 것이다. 이를테면, 池錫永의 上疏를 보면,

(上略) 第伏念 各國人士所著 萬國公法·朝鮮策略·普法戰紀·博物新編·格物入門·格致彙編等書……(中略) 皆足以開發拘曲·瞭解時務者也 伏願設置一院 搜集上項諸書……(中略) 仍命行關各道每邑 選文學聞望之爲一邑翹楚者 儒吏各一人 送赴該院使之觀其書籍其器械 而留院以兩箇月爲期 期滿又遞送一人 留館之費 令該邑量給有能精研書籍 深知世務 有能做樣造器盡其奧妙者 銓其才能而收用……(中略) 此人一悟 則凡此人之子若孫及鄰黨之素所敬服者 率皆從風而化之矣 茲豈非化民成俗之捷徑利用厚生之良法乎 民既解惑而安貧……(下略).²⁸⁾

이라 하여, 萬國公法 등은 時務를 아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므로, 院을 설치하여 수집 收藏케 하고, 또 各地方에서 선발한 사람들을 그 院에 2個月間 머무르게 하여 책의 內容을 究明케 하고 그리하여 世務를 깊이 깨닫게 되면 才能에 따라 登用하라는 것이었다. 또 卞鎰의 上疏을 보면,

(上略) 所謂萬國公法者 雖出外夷 豈無可行之條貫乎 然而我國人 不究其本 先斥其末者 皆畏染洋學之指目 其心然 而其口則不然 此是謬守舊聞 不究與否循行之道故也 讀書者尙如此 況蠢愚之民 尤安知事理之本末 噫 斥邪之書 明莫明於海國圖志 一審其書 則邪教之根抵可辨 黃遵憲爲我國策略·杞憂子易言·萬國公法 即今天下之書…(中略) 而同謂之邪學 斥論之峻發 解惑爲難 以此諸書 刊行於四都·八道 則庶可明其不然……(下略)²⁹⁾

28) 『承政院日記』高宗 19年 8月 23日條.

29) 同上, 10月 7日條.

이라 하여, 朝鮮策略・易言・萬國公法은 오늘날 天下에 通行되는 책이니 四都(松都, 水原, 廣州, 江華)와 八道에서 刊行하라는 것이었다. 國民들이 이 책을 읽으면 時勢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위의 책 중에서 易言만은 政府에 依해 中國 光緒 6年(1880年)本 그대로의 複刊本 (2冊)과 순 한글의 번역本 (4冊)이 刊行되었다. 이 책은 西洋文物制度의 攝取와 나라를 富強케 하는 方法 등을 體系的으로 叙述하고 있는 책으로 評價받고 있어서 刊行된 것이었다.³⁰⁾ 그런데 1880年代에 들어와 韓國의 知識인들이 萬國公法에 關心을 가졌다 해도 完全히 體得할 수 없었다. 여기에는 역시 正規의인 敎育을 받거나 相當한 期間에 걸친 研究가 있어야 했다. 1880年代 韓國人 중에서 中國・日本・美國 등 外國에 遊學한 사람이 多數 있었으나 學問的으로 國際法을 專攻한 이는 없었다. 或 專攻하지는 않았더라도 相當한 知識을 가진 이가 있었으나 政府로부터 登用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自己의 實力을 發揮할 機會을 갖지 못하였다. 最初로 日本과 美國을 遊學하였던 兪吉潁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그는 日本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失職을 당하였고, 또 美國에서 돌아온 뒤에는 오랫동안 軟禁되어 있었다.³¹⁾

한편 이 時期에는 法學을 專門的으로 敎育하는 機關도 없었다. 通譯官 養成을 目的으로 하는 「同文學」이 1883년에 설치되고, 西洋의 初步의인 學問을 가르치는 「育英公院」이 1886년에 설치되는 마당에,³²⁾ 法學을 專門的으로 敎育하는 機關의 설치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 機關이 설치된 것은 1895년에 이르러서였다. 그 機關을 「法官養成所」라 하였다.³³⁾

30) 『改訂版 韓國開化史研究』, pp. 19~30.

31) 日本에 遊學하였다가 돌아와서 쓴 「言事疏」(『兪吉潁全書』, 卷 4 p. 63~74), 그리고 美國에 遊學하였다가 돌아와서 쓴 『西遊見聞』(同全書 卷 1)을 참조할 것. 특히 『西遊見聞』第3編 「邦國의 權利」는 兪吉潁이 萬國公法에 대해 相當한 知識을 갖고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32) 『改訂版 韓國開化史研究』, pp. 103~133.

33) 『舊韓國官報』(亞細亞文化社, 1973) 卷 2, pp. (開國 504年 3月 25日).

물론, 國際法에 대한 知識을 國民에게 알려야 된다고 政府에서는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漢城旬報」가 創刊되자 政府에서는 이 新聞을 통해 國際法을 紹介하는데 힘을 기울이었다. 例컨대, 第34號(開國493年 8月 1日刊)에 「公法說」이란 項目 下에 우선 다음과 같은 內容의 머릿말을 붙였다.

昔我東洋諸國 皆自守一邦 不務遠略經邦之責 只重內政 而外交則未之遑焉 迨至今日 萬國相通 事務日劇 許多關係 以內政稍煩 不有法 而處之則層疊 凡務不可排解 是以歐米法律家 裁成一書 推行於天下 謂之公法 謂之公者 非一國所得而私焉 謂之法者 各國格遵與律法一體 是之謂公法 且其制非由一國 亦非由一世 乃各國之人 歷代往來 習以爲常 及各國大憲審斷之公案 他國援以爲例者 與各國名士論定是非 闡明義理 使後世悅服之者 相參所法始成 而凡諸交涉事件 皆歸於此 而今中法構釁 處局外之國所守者 惟有公法 茲將公法中兩國開戰之日 局外國公享之權利與所在之責守 記之於左 以供時務家參考

즉, 公法에 있어서 公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며, 法이라는 것은 各國이 遵守해야될 法律 一體를 가리킨다고 하고 또 오늘날 安南에서 中國과 프랑스가 戰爭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나라와 關係를 맺지 않고 있는 局外國, 즉 中立國의 權利와 義務를 記述한다고 하였다. 이어 앞에서 紹介한 바 있는 「울시」(Theodor Woolsey) 著 「마틴」 漢譯의 『公法便覽』 卷4 「論戰國與局外交際之例」의 1節에서 13節까지를 7面に 걸쳐 紹介하였다.

이즈음 日本과의 關係는 날로 시끄럽고 여기에 덧붙여 西洋의 나라인 美國과도 修好條約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萬國公法에 能通한 사람이 꼭 필요하였다. 사실 韓美條約의 第12款을 보더라도,

茲朝鮮國初次立約 姑從簡略 應遵條約 已載者 先行辦理 其未載者 俟五年後 兩國官民 彼此言語稍通 再行議定 至通商詳細章程 須酌照萬國公法通例 公平商訂 無有輕重大小之別³⁴⁾

34) 『舊韓末條約彙纂』(國會圖書館, 1965) 中卷, p. 293.

이라 하여, 規定한 條款은 簡略하나 明確히 遵守해야만 할 것이고, 또 條款에 包含되지 않은 것은 5年後 兩國官民이 彼此 言語가 통하게 되면 다시 議定할 것이며, 상세한 通商章程은 萬國公法の 通例에 따라 公平하게 商議・規定한다고 되어 있었다. 따라서 韓國政府로서는 外國과의 交渉에 있어서 萬國公法을 익힌 專門家가 있어야 했다. 그런 사람이 國內에 없다면 國外에서라도 雇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直隸總督兼北洋大臣 李鴻章의 推薦에 依해 韓國政府는 中國人 馬建常과 獨逸人 「뮐렌도르프」(Paul George von Mülledorff, 穆麟德, 1848~1901)을 雇聘하게 되었다. 馬建常은 北洋大臣衙門의 外交部長格인 候選道 馬建忠의 親兄으로 일찍이 유럽에 遊學하여 公法을 배웠고 西洋事情에 밝았으며, 얼마 전까지는 駐日公使 黎庶昌 밑에서 理事라는 職銜을 갖고 일을 하였다.³⁵⁾ 뮐렌도르프는 普魯시아의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出身으로 할레(Halle) 大學에서 法律・東洋語學 등을 공부하고 1869年 이후 中國에 와서 海關과 獨逸領事館에서 勤務하였다. 뒤에 李鴻章과 접촉을 갖게 되고 또 그의 幕客이 되어 추천을 받게 되었다.³⁶⁾ 위의 두 사람이 서울에 도착하기는 1882年 12月 中旬이었다. 이들은 外交顧問이 되어 韓國官吏들을 도왔고 때로는 직접 外交交渉에 나서기도 하였다.

그 뒤 뮐렌도르프가 解任되자 美國人 「데니」(Owen N. Denny, 德尼)가 1886年 5月 外衙門 顧問에 就任하였다. 그는 天津과 上海 駐在 美國領事館에서 勤務한 外交官이었으나 원래는 法官이었다. 오랫동안 美國 오레곤州 「포틀랜드」(Portland) 市 卽決裁判所의 判事を 지냈고 國際法에 相當한 知識을 가졌던 사람이었다.³⁷⁾

35)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文海出版社, 臺北, 1971) 上冊, pp. 81~82, No. 161.

36) 高柄翊, 「穆麟德의 雇聘과 그 背景」(『東亞交涉史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1970) pp. 436~463.

37) Robert Ray Swartout Jr., *Mandarins, Gunboats, and Power Politics: Owen Nickerson Denny and the International Rivalries in Korea*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80).

그런데 이처럼 韓國이 萬國公法の 實施를 꾀했던 時期, 즉 1880年代 中葉 公교롭게도 列強에 依해 主權이 侵害되고 萬國公法 또한 無視당하는 事態가 續出하였다. 그 代表的인 例가 英國의 巨文島占據와 淸國政府에서 派遣한 袁世凱(1859~1916)의 韓國政治干涉이었다.

英國의 巨文島占據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軍港의 攻擊을 豫料하여 그 基地를 確保코자 1885年 4월에 일으킨 것이었다. 英國으로부터 占據의 通告文을 받자 당시의 韓國 外衙門 督辦 金允植은 서울의 英國總領事代理 칼레스(William R. Carles, 賈禮士), 駐淸臨時代理公使 오커너(Nicholas R. O'conor)에게 다음과 같은 抗議文을 發送하였다.

啓者 近從海內傳聞 知貴國有意於巨文一島(即哈米莖也) 此島係我國地方 他國不應 占有於萬國公法 原無此理 且驚且疑 未便明言 日前派員前往該島 查看虛實 姑未回來 即接貴領事所送照會 是係北京使館所寄送者也 細閱來意 始信前言之非謬 豈知 知貴邦之於友誼 明於公法 而有此意外之舉耶 殊違所望 不勝詫異 貴國若以友誼爲重 顧然 改圖函去此島……(下略)³⁸⁾

라고 있듯이, 巨文島占據는 兩國의 友好와 萬國公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즉시 撤收하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英國은 占據한지 22個月이 지난 1887年 2월에 이르러서 撤收하였다.

다음으로 袁世凱의 韓國政治干涉에 대해 살펴 보면 袁世凱가 淸國外交 代表로 韓國에 赴任하기는 1885年 11月이었다. 그는 우선 國王과 一部 高級官吏 그리고 外衙門協辦으로 있던 獨逸人 뮐렌도르프 등이 推進한 韓露密約을 粉碎하고 國王의 廢位까지 劃策하는가 하면 韓國의 外交도 干涉하였다. 韓國政府에서는 自主獨立國家임을 표방하기 위해 修好諸國에 外交使節을 派遣코자 하였다. 그런데 袁世凱는 日本에 대한 公使派遣은 問題視하지 않았으나 美國과 유럽에 대한 公使派遣은 頑強히 反對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은 한동안 公使를 派遣하지 못하였다.³⁹⁾

38) 『金允植全集』 卷 2, pp. 314~315.

39) 文一平著, 李光麟校註 『韓美五十年史』(探究堂, 1975), pp. 188~193.

그리고 袁世凱는 韓國政府의 借款交渉도 妨害하였다. 이렇다면, 1889년 봄 프랑스銀行으로부터 200萬弗의 借款을 契約하려고 하자 袁世凱가 外衙門에게 壓力을 加하여 中止시켰다. 당시 韓國政府에서는 利權을 回收해 보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200萬弗을 얻어 그중 130萬兩으로 從來의 大小借款을 本利子 合하여 清算해 버리고, 나머지 70萬兩으로 政府 財政을 再建해 볼 생각이었다.⁴⁰⁾

結局 袁世凱는 韓國政治에 대해 온갖 干涉을 다하였고 또 淸國의 韓國에 대한 宗主權強化에 힘을 기울였다. 이에 대해 당시의 外衙門 顧問「데니」는 그 干涉을 糾彈하기 위해 「淸韓論」(China and Korea)이라는 小冊子를 著述하였다. 그 內容은 萬國公法の 著者「휘턴」등 歐美 國際法學者의 說을 援用하여 韓國은 堂堂한 主權國家이기 때문에 干涉은 不當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⁴¹⁾

4. 結 語

以上 1870, 80年代를 中心으로 韓國에 있어서의 萬國公法の 受容과 그 影響을 간단히 살펴 보았다.

萬國公法이 처음 傳來되었을 때에는 社會的으로 斥邪思想이 드세어 公公然히 舉論되지 못하였으나 1880年代 中葉에 이르러서는 그 內容의 適用 혹은 遵守가 不可避한 것으로 國民들이 認識하게 되고, 또 거기에 依持해 보려는 생각마저 하게되었다. 그런데 이 時期, 즉 1880年代 中葉 韓國은 공교롭게도 列強에 依해 主權이 侵害되고 萬國公法 또한 無視당하는 事態가 일어났다. 이것은 韓國이 萬國公法을 제대로 活用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었다.

大抵 萬國公法の 活用過程을 歷史的으로 觀察할때 그것은 항상 國家政

40) 『李文忠公全集』 VI, pp. 346~349(寄譯書).

41) 1888年 2月 上海에서 刊行되었다. (總面數는 47面)

策의 手段으로 利用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한나라가 他國과 紛爭을 갖게 되거나 利害의 衝突을 일으키게 되면 自國에게 有利한 方向으로 相對方을 說明하기 위한 基準으로 活用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를 活用하기 위해서는 自國을 防衛할 수 있는 政治的, 軍事的 實力을 갖추고 있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韓國은 自體의 實力培養을 等閑視하고 단지 萬國公法에 들어 있는 「均勢」가 이뤄지기를 바랐다. 그러니까 均勢를 통해 第3國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中立을 維持코자 하였다. 이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甲申政變 뒤 日本에 亡命하였던 朴泳孝도 國王에게 上疏하는 가운데 이를 批判한 바 있었다.

一曰 宇內之形勢 方今宇內萬國 猶古之戰國也 一以兵勢爲難 強者并其弱 大者吞其小 常講武備兼修文藝 相競相勸 然他之罅隙而奪之……(中略) 雖有萬國公法均勢公義 然國無自丘自存之力 則必致前裂不得維持 公法公義 素不足以爲恃也……(下略)⁴²⁾

라 하여, 國家自體가 自存의 힘을 갖지 못하면 萬國公法이든 均勢든 依持할만한 것이 못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韓國은 계속 萬國公法에 依持하려다가 國際的 창피를 당하였다. 그 좋은 例가 淸日戰爭과 露日戰爭때의 경우이다. 특히 露日戰爭 때에는 韓國이 中立을 宣布하였으나 어느 쪽도 應하지 않았을 뿐더러 韓國에서 戰爭을 벌였던 것이다.

한편 萬國公法의 活用을 둘러싸고 韓國과 中國間에 衝突을 일으켰던 것은 不幸한 일이었다. 원래 韓國이 萬國公法을 알게 된 것은 中國을 通해서였다. 또 中國은 韓國에 대해 그 活用을 勸告하였고 韓國은 그 勸告를 받아들여 歐美諸國과 條約을 체결하였다. 여기에는 諸國平行之權, 혹은 自主獨立權의 認定을 前提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勸告할 때에는 달리 中國은 萬國公法을 無視하고 宗主權 強化에 힘을 기울이었다. 이

42) 『日本外交文書』 21卷(日本國際聯合協會, 東京, 1949), p. 296(朴泳孝建白書).

에 대해 韓國이 諸國平行之權을 내세워 不滿을 表示하고 때로 抗拒하였다. 그 뒤로 多年間 堅持하였던 韓中間의 友好關係는 급이 가고 벌어지게 되었다.

The Introduction of the *Wan-kuo*
kung-fa(萬國公法) to Korea

Lee, Kwang-rin

The *Wan-kuo kung-fa*, a Chinese translation of Henry Wheaton's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was completed and published in 1864 by W.A.P. Martin, an American missionary-educator. Martin was later made president of Tung-wen Kwan or the Interpreters College in Peking.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the *Wan-kuo kung-fa* to Korea, and to study its impact upon Korea in the 1870's and 1880's.

Although it is not easy to ascertain when the book was introduced into Korea, largely owing to the lack of the records, it was probably purchased and brought by a Korean mission to China shortly after its first publication. It seems that the book attracted no Korean scholarly talent in the earlier years because of the attacks made against heterodoxy at that time. Eventually in the mid 1880's this Chinese translation began gradually to come to the attention of Koreans.

However, knowledge derived from the book did not prove effective in withstanding the turmoil caused by the Great Powers' attempts to violate Korean sovereignty during the mid 1880's. Korea was not yet prepared to avail herself of the knowledge presented in the book. The fact is that from an historical view-point, ideas from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had often provided a nation with opportunities to persuade another of its rights when clashes of interests or disputes occurred. Of course, that nation had usually been well prepared politically and militarily prior to resorting to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Korea, however, merely hoped that the foreign

powers would achieve an equilibrium as described in the *Wan-kuo Kung-fa*. Korea's aim was to maintain her sovereignty by making use of the balance of power among the foreigners; yet it turned out to be futile. It rather led to a decline in her prestige in international politics.

Meanwhile, it is also useful for us to remember that in disputes with China, Korea took advantage of the *Wan-kuo kung-fa*. China ironically had introduced the book to Korea, suggesting its usefulness. Korea accepted China's advice and it contributed, to some extent, to stimulating Korea to open her doors toward the outside. China's advice initially might be seen to be based on her willingness to consider other nations' sovereignties or equal rights. But on the contrary, China in reality pursued her own claim to suzerainty over Korea, ignoring Korea's independence which was supported by ideas presented in the *Wan-kuo kung-fa*. Korea objected and sometimes protested against the Chinese attitude, insisting on the equal rights of all nations. As a result, Korean-Chinese relations deteriorated at this time.